

## 〈主 題〉

# WTO 基本通信協商 妥結의 意味와 展望

강문석\* · 이한영\*\*

(정보통신부\* 통신개발연구원\*\*)

## □차 례□

### I. 머릿말

### II. 기본협상의 경과 및 주요쟁점

### III. 기본통신협상의 주요결과

### IV. 기본통신협상 타결의 의의 및 향후 전망

### I. 머릿말

지난 2월 15일 WTO 기본통신협상에 참여해온 전 세계의 69개국 정부가 유·무선 시내, 시외, 국제서비스를 포함한 모든 기본통신서비스 부문의 자유화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에 따라 내년부터 전세계 통신시장은 본격적인 경쟁체제 아래 놓이게 되었다. ITU 예측에 따르면 이번 협상의 결과로 총 6000억불 상당의 전세계 통신시장 가운데 동남아, 남미, 동구, 아프리카 등 투자 수익성이 높은 시장을 포함한 90% 이상의 통신시장이 외국사업자와의 전면경쟁에 직면하게 된다. 부가통신서비스의 전면 자유화를 달성한 UR 협상에 이어 이번 협상의 성공적인 타결로 통신서비스 산업 전체가 WTO 체제내로 편입되게 되었다. 전통적으로 비교역재라고 인식되어온 통신서비스가 다자간협정에 의해 명실공히 국가간 교역의 대상으로 된 것이다.

전통적으로 국가주도하에 운영되어 온 통신산업에서 수요의 고도화, 기술융합, 통신서비스의 국제화 등 패러다임의 변화가 전세계적으로 확산되는 가운데 도출된 이번 협상의 타결로 향후 전세계 경제의 지속적인 발전은 물론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한 새로운 전기가 마련되었다. 경제활동이 정보지향적으로 변화하고 지식 및 정보산업이 국부 창출의 원천이 되는 21세기 정보화사회로의 진입을 위해서는 지적

자원에의 접근 및 이용이 획기적으로 활성화될 수 있는 기반조성이 최우선 과제인 만큼,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은 전세계적으로 정보통신의 양적, 질적 이용도를 지속적으로 제고할 수 있는 견인차의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된다.

앞으로 불과 반년 후면 기본통신협상의 결과가 발효된다. 우리나라의 경우에도 서비스별로 차이는 있지만 내년부터 대부분의 기본통신시장에서 선진사업자와의 경쟁에 직면하여야 한다. 시장개방이 이용자에게 요금인하, 품질향상, 다양한 서비스 등 많은 긍정적인 효과를 줄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국내시장의 잠식이라는 부정적인 효과 또한 무시할 수 없기 때문에 시장개방에 대한 견해가 상충하는 것은 당연하다. 중요한 사실은 통신시장 개방이 이제 선택의 문제를 떠나 시대적 요구라는 점이다. 이제 우리도 협상결과에 따른 시장개방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지 차분히 읊미해 볼 필요가 있다. 본고는 WTO 기본통신협상의 진행과정과 주요결과를 재조명함으로써 본협상이 갖는 의의와 향후 세계 통신시장 전망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 II. 기본통신협상의 경과 및 주요쟁점

#### 2.1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통신서비스 교역은 UR 전기간을 통하여 협상참여국들에게 각별한 관심의 대상이 되었다. 이는 통신서비스 산업이 연평균 20-40%에 달하는 급속한 성장산업이기 때문이었지만, 한편으로는 통신서비스 산업이 여타 산업의 효율적인 경제활동을 보조하는 기간산업의 역할을 수행하기 때문이었다. 결국 UR 협상결과의 집합체라고 할 수 있는 1994년 4월 15일 마라케쉬 협정은 통신서비스를 WTO 체제 내로 편입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당시 정도의 차이는 있으나 우리나라를 포함한 57개 WTO 회원국이 부가통신시장의 개방을 약속하였다. 그러나 마라케쉬 협정에서의 통신서비스 교역자유화는 기본통신시장으로까지 확대되지는 않았다. 분명한 사실은 기본통신시장의 경쟁체계가 동시에 확보되지 않는 상황에서 부가통신시장 자유화의 진전은 한계를 보일 수 밖에 없다는 점이다.

이에 따라 협상참여국들은 마라케쉬 각료결정을 통해 1996년 4월 30일까지의 협상시한을 설정하고 기본통신서비스 부문에 대한 후속협상을 계속하기로 합의하였다. 그리고 기본통신 협상 그룹(NGBT: Negotiating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이 후속협상 추진을 위해 WTO 서비스이사회 산하에 설치되었다. 기본통신협상그룹은 1994년 5월부터 1995년 상반기까지는 주로 협상의 대상을 파악을 위해 각국 기본통신시장의 구조 및 규제제도에 관한 질문서를 작성·배포하고, 동질문서에 대한 협상참가국들의 답변서 검토를 진행하였다. 각국 기본통신시장의 현황이 파악된 1995년 중반부터 기본통신협상그룹은 협상 상대국에 대해 시장개방 관련 양허요구안(request)을 제시하고, 이에 의거 양허계획서(offer)를 제출하는 본격적인 쌍무협상을 병행하였다.

1995년 7월 미국의 양허계획서 제출을 계기로 협상 참여국들도 서서히 자국의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일정이 담긴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미국과 함께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상당 부분을 차지하는 EU의 양허계획서 제출지연으로 협상은 빠르게 진전되지 못하였다. 1995년 10월 EU가 양허계획서를 제출함에 따라 협상은 급진전되었고 우리나라도 동년 12월 최초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1996년 1월 말까지 기본통신협상에 정식으로 참가하는 42개 WTO 회원국 정부 가운데 33개국 정부가 양허계획서를 제출함으로써 당시까지의 협상참여국들이 전세계 통신서비스 시장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약 75%에 달하였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96년 초부터 미국은 "critical mass"라는 개념을 앞세워 다른 협상참여국들에게 협상에 대한 경고의 메시지를 전하기 시작하였다. 이는 협상타결에 필요한 양허계획서 제출국수와 양허수준을 동시에 의미하는 용어이지만, 미국은 자국의 협상 전략 차원에서 critical mass에 대한 정의를 제시하지는 않았다. 다만, 당시 미국에 의하면 critical mass에는 EU, 일본, 캐나다, 여타 OECD 회원국, 싱가폴, 한국, 칠레, 멕시코, 브라질, 아르헨티나, 인도, 인도네시아, 태국, 말레이지아 등이 포함되며, 이를 국가가 MFN(Most-Favored-Nation) 원칙에 의거한 전면자유화를 양허하지 않을 경우 미국도 협상타결에 동의하지 않을 것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였다.

96년 4월 들어 양허계획서 제출의 증가와 기존 양허계획서의 개선이 눈에 띄게 이루어져 4월 30일 협상타결의 가능성성이 높아 보였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도 설비보유 부문에 대한 유·무선 33% 외국인 지분 허용과 2001년 음성재판매 허용을 골자로 하는 최초 양허계획서를 부분 수정하여 96년 4월 말 수정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그러나 협상종료 최종시점에서 미국은 그때까지 아무도 예상치 않았던 협상연기를 선언하였다. 연기사유로는 critical mass의 미달 및 국제서비스와 위성서비스에 대한 양허부족을 들었다. 당시 구체적으로 제기된 이유 가운데 하나는 EU의 양허개선 거부와 동남아 개도국들의 양허계획서 미제출을 들 수 있다. 또한 보다 직접적인 이유로서 미국의 국제서비스 및 위성서비스사업자를 중심으로 한 협상타결 반대압력을 지적할 수 있다.

한편 미국은 1995년 11월 각국의 시장진입 약속을 유효화하기 위해서는 '경쟁촉진적인 규제환경(pro-competitive regulatory framework)'의 조성이 필수적이며, 이를 위해서는 공정하고 경제적인 상호접속, 규제제도의 투명성, 공정경쟁보장장치, 독립규제기관의 존재 등에 대한 추가적인 양허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은 규제원칙이 각국의 시장개방에 관한 양허내용을 실효화시킬 수 있는 근거를 제시하여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각국의 규제제도와 양립할 수 있을 정도로 일반적이고도 신축적인 내용이어야 한다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우리나라를 포함한 주요국들은 수차례의 비공식회의를 거친 끝에 1996년 4월 추가적인 양허를 위한 참조문서(Reference Paper)로서 경쟁촉진적인 규제원칙 목록

을 탄생시켰으며, 이는 기본통신협상그룹이 이룩한 최대실적으로 평가받고 있다.

## 2.2 기본통신그룹(GBT)

1996년 4월 30일 제17차 기본통신협상그룹회의에서 협상타결이 실패함에 따라 협정발효일은 98년 1월 1일로 그대로 두고, 협상시한만을 1997년 2월 15일까지 연장하였다. 94년 이래 기본통신협상을 추진하여 온 서비스이사회 산하 기본통신협상그룹도 기본통신그룹(GBT: A Group on Basic Telecommunications)으로 명칭을 바꾸어 추후 협상추진에 임하기로 하였다.

기본통신그룹은 1996년 7월 첫번째 회의부터 협상 연기의 원인이 되었던 국제서비스와 위성서비스 문제를 해결하는데 최대한의 노력을 경주하였다. 물론 전 기간에 걸쳐 critical mass의 달성이 가장 중요한 현안이었다는 점에는 변함이 없다. 돌아보면 critical mass를 도출할 수 있는 중요한 분수령은 미국과 EU가 수정양허계획서를 제출한 1996년 11월 고위급회의와 상당수 협상참여국들의 양허개선 의사가 확인된 1996년 12월 싱가폴 WTO 각료회의이다. 또한 캐나다와는 대조적으로 우리나라가 1995년 12월에 이미 마련한 협상전략에 따라 1997년 2월 13일 개선된 최종양허계획서를 제출한 것도 협상참여국들에게 강력한 양허개선 압력을 전달함으로써 협상 막바지에 멘시코는 물론 다수 개도국의 양허개선을 유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고 평가받고 있다.

협상과정에서 국제서비스 논의는 주로 미국의 사전면허심사에 대한 대안을 마련하는 방향으로 진행되었다. 국제서비스 허가부여 기준으로 삼는 미국의 유효경쟁심사(Effective Competitive Opportunity Test) 제도가 MFN 원칙에 정면으로 위배되기 때문이었다. 그러나 미국은 1996년 10월까지 국제서비스 시장에서의 공정경쟁보장장치 마련에는 큰 관심을 보이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국제서비스에 대한 사전면허심사 방침에도 변화를 보이지 않았다. 근원적인 문제해결 방안이 국제서비스에 대한 협상참여국들의 양허수준 개선 및 기존 국제정산체계의 개혁이라고 보는 미국은 1997년 1월 협상에서 FCC의 NPRM(Notice of Proposed Rule-Making)으로 고시된 국제정산료 Benchmark 제안을 제시함으로써 사실상 기본통신협상에서 국제서비스 문제에 대한 추가적인 논의는 중

단되었다. 대부분의 협상참여국들은 미국의 Benchmark 제안에 대한 반대의사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공개적으로 비난하지는 않았다. 첫째는 국제정산료 문제에 대한 적극적인 반대입장 개진은 협상시한이 얼마 남지 않은 상황에서 자칫 협상 결렬을 가져올 수도 있다는 우려 때문이었다. 둘째로 국제정산료 문제에 대해서는 이미 오랜 기간동안 ITU에서 논의되어 온 만큼 WTO보다는 ITU를 주된 논의의 장으로 삼겠다는 취지에서 비롯된다.

위성서비스 논의는 협상초기 미국의 질문서를 중심으로 진행되었다. 주로 위성서비스의 정의, 범위, 규제제도 등이 국별로 상이하다는 점에서 각국의 양허 내용을 좀더 명확하게 하자는 것이 질문서 배포의 기본취지였으나 답변서 제출실적은 극히 저조하였으며, 주요현안이라 할 수 있는 위성서비스에 대한 양허계획서상의 기재방식, 정부간 위성기구(ISO: Intergovernmental Satellite Organization)의 법적지위, GMPCS를 위한 국별 주파수배정의 조화, 위성 및 방송서비스의 구분방식 등에 관한 의문해결에는 역부족이었다. 다만, 협상 최종일에 위성서비스의 양허형식과 관련하여 별도 제한없이 기술중립적 양허방식을 택하는 경우 위성서비스가 자동적으로 양허된 것으로 간주한다는 의장노트를 채택한 것이 문서로 남은 유일한 실적이다. 위성서비스 관련 여타 문제들에 대해서는 협상과정을 통하여 뚜렷한 타협안이 도출되지 못함으로써 향후 국가간 분쟁의 소지를 안고 있다. 한편 일방향 위성방송서비스와 관련하여 미국은 DTH(Direct-To-Home), DBS(Direct Broadcasting Services), 디지털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한 MFN 의무 면제를 신청하였다. 위성방송서비스에 대한 미국의 MFN 의무 면제 신청은 향후 미국이 동서비스에 대해 상호주의 원칙에 따라 자국 시장을 개방할 것임을 시사한다.

## III. 기본통신협상의 주요결과

### 3.1 우리나라의 시장자유화계획

우리나라는 관계부처간 협의를 통해 1995년 말에 확정된 기본통신시장 자유화계획 및 협상전략에 의거하여 금년 2월 15일까지 추진된 기본통신협상 전과정에서 총 3차례 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최초양허계획

서는 1995년 12월 제10차 기본통신협상그룹(NGBT) 회의에서 제출되었으며, 주요내용으로는 유선 및 무선분야에 대한 외국인투자 허용 및 음성재판매자유화가 포함되었다. 수정양허계획서는 협상연기 결정 직전인 1996년 4월 제15차 기본통신협상그룹회의에서 제출되었다.

당시 양허개선 사항으로는 국경간공급의 제한적 허용, 위성통신서비스의 양허, 강제기술표준의 삭제를 들 수 있다. 마지막으로 기본통신협상의 최종단계인 1997년 2월 14일 제8차 기본통신그룹(GBT) 회의에서 외국인투자 한도의 확대 및 음성재판매의 조기자유화, Reference Paper의 추가적 양허 등을 주요 양허개선 내용으로 하는 최종양허계획서를 제출하였다.

구체적으로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현재 기간통신 사업에 해당하는 설비보유서비스의 경우, 1) 동일인

지분소유 한도는 내·외국인 공히 유선 10%, 무선 33%로 제한되며, 2) 외국인의 대주주 자격취득은 1999년부터 허용되며, 3) 외국인 투자한도는 당분간 33%이지만 2001년부터는 49%까지 상향 조정한다는 것이다. 향후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에 의해 특정통신사업자로 구분될 음성재판매서비스의 경우 1999년부터 허용되나 외국인 투자한도는 2000년까지는 49%로 제한된다. 또한 음성재판매서비스가 국경간공급 형태로 제공되는 경우에는 상업적 약정체결 의무에 추가하여, 2000년까지 국내에 회사(법인)로서 주재하지 않고는 서비스를 공급할 수 없다고 양허하였다는 점에서 서비스의 국경간공급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고 있다. 이는 국경간공급을 통한 음성재판매서비스 제공을 인정할 경우 국내 재판매시장의 조기활성화라는 정책목표가 심각하게 훼둘릴 수도 있다는 정책적인 판단에 따라 취해진 조치이다. 한국통신에 대해서는

#### 〈우리나라 최종양허계획서의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최 종 양 허 안
외국인투자	유선: 금지 무선: 33% 동일인 제한 유선: 10%, 무선: 33%, KT: 1%	'98년부터 유·무선 33% 허용 (KT: 20%) '2001년부터 유·무선 49% 허용 (KT: 33%) 동일인 제한: 좌동 (단, KT: 3%)
외국인 대주주	금 지	'99년부터 허용 (KT 금지)
외국인 대표자 및 외국인 임원	외국인 대표자 금지 및 임원수 1/3 초과 금지	'98년부터 외국인 대표자 허용 및 임원수 제한 폐지
재판매 서비스	공중망접속 음성재 판매	'99년부터 허용 (단, 외국인 지분참여 49%로 제한) '2001년부터 외국인 지분참여 100% 허용
	이외 모든 재판매	'98년부터 100% 허용
사업자수	정부사전공고방식	주파수 제약에 의하여서만 제한 가능
국경간공급	제한 가능	국내사업자와 상업적 약정체결을 조건으로 허용 '2000.12.31일까지 국내에 회사(법인)설립 없이는 공중망접속 음성재판매서비스 공급 불가
규제원칙	국내 규제원칙 적용	Reference Paper의 규제원칙 양허
일방향 위성방송서비스: DTH/DBS 등 위성TV방송, 디지털위성라디오방송	제한 가능	양허대상에서 제외

예외적으로 외국인의 대주주 자격취득을 금지하고, 동일인 지분소유한도도 3%로 제한하고 있다. 한국통신에 대한 외국인의 주식취득 총한도는 2000년까지는 20%, 그 이후에는 33%까지 확대할 예정이다.

모든 양허대상서비스에 대해 전송방식 제한을 두지 않은 것도 중대한 변화이다. 다시 말해 1998년부터 서비스공급자는 우리나라가 양허한 모든 서비스 공급을 위해 유선, 무선, CATV망, 위성망, 해저케이블 등 여하한 형태의 전송방식을 이용할 수 있다. 최종양허계획서에서는 위성통신서비스가 양허대상에서 제외되어 있으나, 위성서비스를 전송방식의 하나로 이해한다는 의장노트에 따라 위성방송서비스를 제외한 모든 위성서비스가 양허된 것으로 간주한다. 또한 주파수 제약에 따른 사업자수 제한이 최종양허계획서에서 삭제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의장노트에 따라 주파수 제약 때문에 기술적으로 어쩔 수 없이 사업자수를 제한하는 것은 허용된다. 시장진입 관련 우리나라 양허내용의 실효성을 뒷받침하기 위해 1996년 4월 기본통신협상 그룹 회의에서 합의된 규제원칙에 관한 Reference Paper를 추가양허함으로써 비차별적인 국내 규제제도 운영이라는 약속이행의 의무를 부담하게 된 것도 매우 중요한 양허개선이다.

### 3.2 전세계 지역별 시장자유화계획

기본통신협상이 타결된 금년 2월 15일 현재 양허계획서를 제출한 회원국은 총 69개국이다. 이하에서는

이들 국가를 크게 북미, 유럽연합(EU), 기타 유럽, 아시아, 남미, 대양주, 중동 및 아프리카 등 7개 지역으로 구분하고 지역별 양허내용을 분석하고자 한다.

#### 3.2.1 북미 지역

전세계에서 가장 자유화된 통신시장이라고 할 수 있는 북미 지역에는 미국과 캐나다가 속해 있다. 미국의 양허내용 가운데는 무선분야 및 국제서비스 분야에 대한 상호주의(reciprocity) 적용 폐지가 가장 눈여겨 볼 부분이다. 무선국에 대한 미국의 20% 외국인 직접투자 제한은 현행대로 유지할 방침이나, 내년부터 간접투자에 대해서는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이다. 이에 따라 무선국에 대한 외국인투자에 대해 적용하는 상호주의는 내년부터 폐지될 것이다. 유선분야 및 재판매서비스 부문에 대해서도 미국은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았다. 또한 현재 국제단순재판매를 포함한 국제서비스 분야에 대해 적용하고 있는 상호주의도 내년부터는 폐지될 예정이다.

외국인투자에 관한 한 캐나다의 양허내용은 매우 보수적이다. 캐나다는 재판매서비스에 대한 특별한 제한은 없으나, 설비보유서비스에 대해서는 외국인의 직·간접투자를 총 46.7%(직접 20%)까지만 허용하고 있다. 또한 대주주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설비보유서비스 사업자의 경우 외국인 임원은 20% 이내로 제한된다. 그러나 국제서비스 및 고정위성서비스 시장에 대한 자유화 조치는 중요한 양허내용 개선이다. 현재 Teleglobe Canada가 갖고 있는 국제서비스 공급독점

북미지역 국가들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미 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유선 : 100%(직/간접 불문)</li> <li>- 무선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간접투자 : 100%</li> <li>· 직접투자 : 20%</li> </ul> </li> </ul>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캐나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설비보유 : 직/간접투자 합계 46.7%(직접투자 20%) ※고정위성 및 해저케이블을 제외한 모든 서비스</li> <li>- 고정위성서비스 : 2000.3.1일부터 100%(직/간접 불문)</li> <li>- 해저케이블육양: 1998.10.1일부터 100%(직/간접 불문)</li> </ul>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Telesat Canada: 2000.2월까지 국내 및 미국-캐나다 간고정위성서비스 독점</li> <li>- Teleglobe Canada : 1998.9월까지 국제서비스 독점</li> </ul>	제한없음	제한없음 단, pay telephone 이용 불허

## 유럽연합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E U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아래국가 이외에는 100% (직/간접 불문)</li> <li>- 제한국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프랑스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유선 : 100%(직/간접 불문)</li> <li>무선 : 간접투자 100%</li> <li>(직접투자 : 20%)</li> </ul> </li> <li>· 포르투갈 : 직/간접투자 합계 25%</li> <li>음성전화 : 2000.1.1부터 허용 총 25%의 외국인투자</li> <li>설비보유 : 1999.7.1부터 허용 총 25%의 외국인투자</li> <li>※통신법개정을 통해 1999년중 외국인 투자한도 확대 예정</li> <li>· 그리스</li> <li>음성전화 및 설비보유:2003.1.1부터 100%</li> <li>· 아일랜드</li> <li>음성전화 및 설비보유 : 2000.1.1부터 100%</li> <li>· 스페인 : 1998.11.30부터 100%</li> </ul> </li> </ul>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권은 내년 10월부터 폐지되며, Telesat Canada가 갖고 있는 캐나다 국내 지점간 및 캐나다와 미국간 고정위성 서비스 공급독점권도 2000년 3월부터 폐지될 예정이다.

## 3.2.2 유럽연합(EU)

EU의 자유화계획은 WTO 기본통신협상 이전인 1987년 6월에 발표된 유럽의 통신서비스 및 장비시장의 발전을 위한 녹서(Green Paper)에 이미 정리되어 있다. 이에 의하면 그리스, 아일랜드, 포르투갈 및 스페인 등 상대적으로 통신발전이 늦은 국가들을 제외한 역내국가들은 1998년 1월 1일부터 완전한 자유화를 결정하였다. 반면 예외가 인정된 4개국들에 대해서는 2003년까지 5년간의 자유화 유예기간을 부여하였다. 기본통신협상에서 EU가 제출한 양허계획서의 특징은 거의 예외없는 전면자유화라고 할 수 있다. 기본통신협상 초기 문제가 되었던 프랑스의 경우에도 직접투자 20%만 허용하던 무선부문에 대해 간접투자를 100%까지 허용하기로 약속하였다. 또한 당초 자

유화를 유예하였던 아일랜드, 포르투갈, 스페인도 자유화를 앞당기고 있다. 특히 스페인이 1998년중 자유화를 약속한 점은 중대한 변화라고 할 수 있다.

## 3.2.3 기타 유럽지역

EU에 속하지 않는 유럽국가로는 서유럽의 스위스, 노르웨이, 아이슬란드와 동유럽의 체코, 슬로바키아, 불가리아, 루마니아, 헝가리, 폴란드가 있다. 여기에서 서유럽에 속한 국가들은 내년부터 기본통신시장에 대해 아무런 제한을 두지 않을 예정이다. 다만, 스위스는 당분간 음성전화 부문에 대해 스위스 PTT의 독점권을 인정할 것으로 보인다. 헝가리(75%)를 제외한 모든 동유럽국가들은 외국인투자를 100%까지 허용함으로써 통신 하부구조 건설에 필요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이다. 그러나 음성전화 부문에 대해서는 설비보유와 재판매를 구분하지 않고 대부분 2002년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다.

## 기타 유럽지역 국가들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스위스	100%(직/간접 불문)	- 음성전화 : 스위스 PTT 독점	제한없음	독점
노르웨이	10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아이슬란드	10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체코	- 음성전화 : 2001.1.1부터 100%(직/간접 불문) - 이동전화 : 100% (직/간접 불문)	- SPT Telecom : 2000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 2000.1.1부터 제한없음
슬로伐	100%(직/간접 불문)	- Slovak Telecom: 2002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2002년까지 독점
불가리아	100%(직/간접 불문)	- BTC Ltd의 독점 · 설비보유서비스 : 2004년 까지, · 음성전화서비스: 2002년 까지	제한없음	금지
루마니아	100%(직/간접 불문)	- Romtelecom : 2002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 2002년까지 독점
헝가리	- 75%(직/간접 불문)	- 시외/국제서비스: 2002.12.31까지 독점 - 시내서비스: 2003. 2.31까지 독점	제한없음	-2002.12.31까지 독점
폴란드	- 시내서비스 : 100% (직/간접 불문) - 셀룰라서비스 : 49% (직/간접 불문) - 시외/국제서비스 : 2003년 부터 49%(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 시외/국제서비스: 2003년 부터 49%

## 3.2.4 아시아 지역

우리나라, 일본, 홍콩, 동남아국가 등이 속한 아시아지역은 경제발전 단계가 상이한 만큼 양허수준도 차이가 크다. 특히 시장규모나 양허범위로 볼 때 우리나라와 일본이 단연 돋보인다. 일본은 NTT와 KDD에 대한 외국인 투자한도 20% 제한을 제외하고는 특별한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홍콩의 경우 시장규모가 큰 국제서비스시장에 대해 HK Telecom의 독점체제를 유지한다는 점이 매우 제한적인 내용이다.

대부분의 동남아국가들은 20%-40% 정도의 외국인 투자제한을 유지하고 있으나, 싱가풀의 경우는 간접 투자를 73.99%까지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필리핀을 제외한 모든 동남아국가들이 현행대로 독점 또는 복점체제를 고수할 예정이다. 한편 음성재판매에 대해서는 싱가풀, 필리핀, 태국, 인도, 말레이지아가 외국 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고 있으며, 기타 동남아국가들의 경우에도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할 것으로 보인다.

##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시장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일 본	100%(직/간접 불문)	- NTT, KDD : 1/5	제한없음	제한없음
홍 콩	100%(직/간접 불문)	- 국제전화: HK Telecom 독점	제한없음	HK Telecom 독점
싱 가 풀	- 설비보유/이동서비스: 73.99% (직접투자: 49%, 간접투자: 24.99%)	- 설비보유 유선전화: ST가 2000.3월까지 독점	제한없음	공전공접속 금지
필리핀	4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지
태 국	- 설비보유 : 20% (직/간접 불문)	- 외국인주주: 총주주의 20% 이하	제한없음	금지
파키스탄	100%(직/간접 불문)	- PTCL: 2004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 2004년까지 독점
브루나이	100%(직/간접 불문)	- 시내서비스: JTB 독점 - 국제서비스: JTB 와 DST Com이 2010까지 복점 - 셀룰라: DST Com이 2010까 지 독점	제한없음	- 2010년까지 복점
방글라데시	100%(직/간접 불문)	- 국제서비스 : 독점	제한없음	- 국제서비스: 독점
인 도	- 시내/시외/ 셀룰라(GSM) : 25%(직/간접 불문)	- 시내/시외 : 지역별 DOT/MTNL 및 1개의 사업자 과점 - 셀룰라 : 지역별 2개사업자 복점	제한없음	금지
인도네시아	- 35%(직/간접 불문)	- 시내서비스 : PTTelkom과 5개 지역 공동사업자가 2011년까지 과점 - 시외서비스: PT Telkom이 2006년까지 독점 - 국제서비스 : PT Indosat과 PTSatelindo가 2005년 까지 복점	제한없음	- 시외서비스: 2006년 까지 독점 - 국제서비스: 2005년 까지 복점
말레이지아	- 30%(직/간접 불문) ※ 기존사업자의 지분만 소유가능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지
스리랑카	- SLT : 35% (직/간접 불문)	- 시내/시외/국제서비스: 1999.12.31까지 SLT 독점	제한없음	1999.12.31까지 SLT가 독점

## 3.2.5 중남미 지역

1980년대 이후 통신부문의 민영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는 중남미국가들의 경우 외자유치를 위해 상당수의 국가들이 외국인투자에 대해 우호적이다. 물론 시장 전망이 좋다고 할 수 있는 멕시코의 경우에는 49%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하고 있다. 그리고 설비보유서비스에 대한 독점체제 유지도 시장규모가 작은 카리브해 지역 국가들을 제외하면, 늦어도 2001년까지는 종료될

예정이다. 다만, 시장규모가 가장 크다고 할 수 있는 브라질은 양허내용의 대부분을 현재 진행중인 통신법 개정 결과에 연동시킴으로써 셀룰라서비스에 대한 49% 외국인투자 허용을 제외하고 나면 양허내용이 아직 불확실하다. 음성재판매에 대해서는 브라질, 폐루, 콜롬비아, 아르헨티나, 도미니카, 자메이카, 베네수엘라, 에콰도르, 볼리비아 등 비교적 많은 국가들이 외국사업자의 시장진입을 금지하거나, 당분간 독점체제를 유지할 전망이다.

## 중남미지역 국가들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멕시코	- 설비보유 : 49%(직접) - 셀룰라 : 49% 초과 가능 (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브라질	- 설비보유 : 금지 · 통신법 개정후 1년이내 양허예정 - 셀룰라 : 49% (직/간접 합계) · '99.7.20일부터 100% (신규사업 자에 한함)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지
칠레	- 시외/국제서비스 : 100% (직/간접 불문) - 시내서비스 : 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페루	100%(직/간접 불문)	- 1999.6월까지 기본통신 독점	제한없음	-1999.6월까지 독점
콜롬비아	- 70%(직/간접 불문) · 셀룰라:동일인 제한 30%	- 시외/국제서비스 : NTE 독점	제한없음	금지
아르헨티나	- 2000.11.8일부터 100% (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2000.11.7일까지 독점
도미니카	100%(직/간접 불문)	- 모든서비스 : 독점사업자에게 유보	제한없음	독점
도미니카공 화국	10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트리니다드 토바고	100%(직/간접 불문)	- 2010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제한없음
자메이카	100%(직/간접 불문)	- 2013.9월까지 독점	제한없음	- 2013.9월까지 독점
과테말라	10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벨리즈	100%(직/간접 불문)	- BTL: 독점권 (BTL에 대한 동일인 지분제한 25%)	제한없음	- BTL: 독점권
그레나다	100%(직/간접 불문)	- 2006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 2006년까지 독점
안티구아 엔 바부다	100%(직/간접 불문)	- 국내전화 : 정부독점 - 국제전화 : 2012년 까지 독점	제한없음	- 독점(국제전화: 2012년까지)
베네수엘라	100%(직/간접 불문)	- CANTV : 2000.11. 27일부터 독점폐지	제한없음	금지
엘살바도르	100%(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제한없음	제한없음
에콰도르	- 셀룰러서비스 : 100% (직/간접 불문) - 이외의 서비스 : 금지	제한없음	제한없음	금지
볼리비아	100%(직/간접 불문)	- 시내/시외/국제: 2001.11.26일까지 독점(이동전화 세외)	제한없음	-2001.11.26까지 독점

## 대양주지역 국가들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호 주	100%(직/간접 불문)	- Telstra : 11.7% (동일인 제한 : 1.7%) - Optus : 동일인 제한 5% - Vodafone : 49%	제한없음	제한없음
뉴질랜드	100%(직/간접 불문)	※TCNZ(뉴질랜드통신공사) : 동일인 49.9%로 제한	제한없음	제한없음
파푸아 뉴기니	100%(직/간접 불문)	- Telikom PNG : 2002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2002년까지 독점

## 중동 및 아프리카지역 국가들의 자유화계획

구 분	외국인 지분허용	대표적 기간통신 사업자 제한	대주주 제 한	음성재판매 서비스 제한
이스라엘	- 설비보유 시내/시외 서비스 : 100% (직/간접 불문) - 국제서비스 : 74% (직/간접 불문) - 무선 : 80% (직/간접 불문)	- Bezeq : 2001년까지 시내/시외서비스 독점 - Bezeq international : 2002년 까지 국제 서비스 독점	제한없음	금지
터키	- 유선전화 : 100% (직/간접 불문) - 무선 : 49%(직/간접 불문)	- Turk Telecom : 2005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2005년까지 독점
남아공화국	30%(직/간접 불문)	- Telkom : 2003년 까지 독점	제한없음	금지 - 2000년에서 2003년 기간중 자유화 예정
코트디부르	100%(직/간접 불문)	- 음성전화서비스 : 2008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2008년까지 독점
가나	100%(직/간접 불문)	- 모든 서비스 : 2003년까지 복점	제한없음	2003년까지 복점
모리셔스	100%(직/간접 불문)	- 국내 및 국제서비스 : 2004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금지
튀니지	- 시내서비스 : 2003년 부터 49% - 무선서비스 : 2000년 부터 49% - 시외/국제서비스 : 금지	- Tunisia Telecom : 2002년부터 10% (직/간접 불문)	제한없음	금지 (시외/국제서비스는 양허하지 않음)
모로코	- 음성전화: 2001년까지 금지 - 기타서비스: 제한없음	- IAM : 2001년 까지 음성전화 독점	제한없음	2001년까지 독점
세네갈	100%(직/간접 불문)	- SONATEL : 최단 2003년까지, 최장 2006년까지 독점	제한없음	최단 2003년까지, 최장 2006년까지 독점

### 3.2.6 대양주 지역

이 지역에는 일찍부터 개방적인 통신정책을 유지하여온 호주, 뉴질랜드와 개도국인 파푸아뉴기니가 속해 있다. 호주는 외국인투자를 100%까지 허용할 계획이나, 대표적 통신사업자인 Telstra, Optus, Vodafone 대해서는 부분적으로 외국인투자를 제한하고 있다. 또한 위성서비스 및 이동서비스에 대해 금년 6월말까지 사업자수를 2-3개로 제한할 계획이나, 금년 7월부터는 사업자수에 대한 아무런 제한도 두지 않을 예정이며, 음성재판에 대한 제한도 전혀 없다. 1989년 이래 대부분의 시장이 자유화된 뉴질랜드는 기간통신사업자인 TCNZ에 대한 동일인제한 49.9% 이외에는 아무런 제한을 두고 있지 않다. 파푸아뉴기니의 경우에도 외국인투자에 대한 제한은 없으나, 현재 모든 기본통신서비스의 독점사업자인 Telikom PNG의 독점권을 2002년까지 유지할 예정이다.

### 3.2.7 중동 및 아프리카 지역

이 지역에는 중동으로 구분된 이스라엘, 터키와 함께 통신 하부구조가 아직 열악한 7개 아프리카 제국이 속한다. 이 가운데 이스라엘과 터키는 각각 2002년, 2005년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할 예정이나 민영화가 빠르게 진행중이다. 두나라 모두 외국인투자에 대해서는 관대한 편이어서 내년부터 서비스 시장별로 49%-100%까지 외국인투자를 허용할 예정이다. 아프리카 지역에서는 남아공화국이 전망이 밝은 시장으로 예측되나, 외국인투자를 30%까지만 허용하고 2003년 까지 독점체제를 유지하는 등 보수적인 시장개방계획을 갖고 있다. 또한 튜니지와 모로코는 음성전화서비스에 대한 시장개방을 2000년 이후로 유예하거나 금지함으로써 당분간은 극히 폐쇄적인 시장을 유지할 예정이다. 나머지 4개국은 독점체제는 계속 유지하지만, 외국인투자는 100%까지 허용함으로써 통신망 구축을 위한 외자유치에 적극적이다.

## IV. 기본통신협상 타결의 의의 및 향후 전망

### 4.1 전세계 통신시장의 확대·발전

WTO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은 양적으로는 전세계 통신시장의 급속한 확대를, 질적으로는 서비스 선택

폭의 확대 및 서비스 품질개선을 가능하게 할 것으로 보인다. ITU는 이미 기본통신협상의 성공적 타결로 세계에서 가장 역동적으로 발전하는 통신시장이 가치 면에서 현재 6000억 달러에서 2000년까지 1조2천억 달러 이상으로 두배 가량 늘어날 것으로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전세계 인구의 2/3는 아직 단 한번의 전화 통화 경험도 없으며, 전세계 56억 인구 가운데 단지 6억 인구만이 전화선을 갖고 있다는 점에서 향후 개도국 시장의 잠재력은 실로 막대한 것이라고 할 수 있다.

좀더 구체적으로 이번 협상타결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긍정적인 효과를 발휘할 것으로 보인다. 첫째로, 정보산업과 통신기반구조에의 투자증대로 인한 각국 기간망의 근대화 및 고도화와 보다 자유화된 시장운용을 위해 필수적인 규제제도의 개혁을 위한 결정적인 계기가 될 것이다. 둘째로, 이용자에게 보다 저렴한 가격으로 보다 다양한 서비스 선택의 가능성을 실현함으로써 이용자들에 대한 혜택이 늘어날 것이다. 셋째로, 통신서비스 품질향상 및 비용하락을 통해 다른 산업분야의 성장에도 기여할 것이며, 국가간 정보의 흐름을 원활히하여 서비스의 국가간 교역을 촉진할 것이다. 전세계 기본통신시장의 개방으로 이용자들은 연간 3000억 달러 이상의 비용을 절약할 수 있다고 한다. 예를 들어 현행 국제통화요금은 이번 협상타결의 결과로 80% 이상이 하락할 것이라고 예측되고 있다.

### 4.2 통신사업의 Global화 및 개도국 통신시장 현대화

협상타결을 통하여 정부 주도의 독점사업 영역으로 간주되어 왔던 통신서비스 분야는 전세계적인 차원에서 경쟁사업 영역으로 변화할 수 있는 획기적인 전기를 맞게 되었다. 상대적으로 시장이 많이 열려 있는 미국, 영국 등 선진국에게는 시장개방시에도 내부적인 변화요인은 적겠지만, 외부적으로는 전세계 통신 시장의 주도권 확보를 위한 무한경쟁이 불가피하다. 이에 따라 Global Carrier들은 이미 Global Network 구축을 위한 전략적 제휴를 가속화하고 있으며, 적극적인 해외투자를 통해 기업규모 및 경영방식의 세계화를 도모하고 있다. BT와 MCI는 Concert를, Sprint Corp., Deutsche Telekom, France Telecom은 Global One을, AT&T, Unisource, KDD, ST는 WorldPartners

를 각각 합작사로 구성했다. 한편 국영 독점사업자들이 전통적으로 시장을 지배하던 개도국들에게는 통신 하부구조의 구축, 국내시장의 구조조정 및 규제완화 등 대외경쟁을 위한 체질개선이 가장 당면한 과제이다. 이에 따라 개도국들의 통신시장 현대화 욕구와 선진국들의 세계시장 선점 욕구는 당분간 상호보완적인 관계를 유지할 것으로 보이나, 일부 개도국들은 이미 선진국 기술 및 자본이 침투하는 정도에 따라서는 자체 통신주권을 박탈당하고 선진국 통신사업자들의 통신식민지로 전락할 수 밖에 없다는 사실에 신경을 곤두세우고 있다.

#### 4.3 WTO/다자간협상의 신뢰성 제고

한편 이번 협상타결은 그동안 UR 후속협상의 난항으로 신뢰도 측면에서 심각하게 도전을 받아온 WTO 체제의 위상을 제고하는데 크게 기여하였다. 기본통신협상과 비슷한 시기에 개시된 금융 및 해운협상은 아직도 협상타결 여부가 불투명한 상태이다. 사실 96년 4월 기본통신협상 타결연기가 결정될 당시만해도 광범위한 산업분야에 걸친 포괄적인 자유화협상에 비해 산업분야별 자유화협상은 서로 다른 산업분야간에 자유화수준의 수위조절 여지가 없기 때문에 협상타결 가능성에 회박하다는 염려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번의 성공적인 협상타결은 분야별 자유화협상의 경우에도 분야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다자간협상 방식으로 추진되는 한 성공적으로 마무리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주게 되었다. 다시 말해 쌍무협상에 비해 다자간협상은 협상현안에 따라 다수국간 힘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고, 전반적인 자유화수준에 지장을 주지 않고도 다수의 협상참여국 상호간 또는 세부 협상분야 상호간에 자유화수준을 조절할 수 있는 게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번 기본통신협상에서도 캐나다와 같은 주요국의 양허수준이 미흡하고, 국제서비스 분야에 대한 다자간합의가 만족스럽지 못했음에도 불구하고 협상이 타결된 것은 쌍무협상에 비해 다자간협상이 여러모로 장점이 많다는 점을 입증하고 있다.

#### 4.4 시장개방 가속화 및 분쟁발생 가능성 증대

기본통신협상의 타결에 따른 통신시장의 급속한 환경변화 속에서 향후 우리나라의 통신정책이 어떠한 방향으로 전개되어야 할 지는 심각하게 고민하여야 할 문제이다. 1990년 이후 우리나라는 전세계적인 통

신시장 자유화 추세속에 국내 통신산업의 경쟁력 강화라는 정책목표 달성을 위해 통신시장에 대한 지속적인 경쟁도입과 구조조정을 단행하여 왔다. 앞으로도 이러한 목표가 우리나라 통신정책의 기조를 이루게 될 것이라는 점은 재론의 여지가 없다. 그러나 통신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부정책의 운용범위가 내년부터는 보조금협정을 비롯한 각종 WTO 규범적 용에 따라 상당히 줄어들 수 밖에 없으며, 통신시장 자유화는 이제 선택의 문제가 아닌 전세계적인 대세로서 그 속도를 더할 것이다.

통신시장의 자유화가 가속화할 것이라는 전망은 크게 두가지 사실에 근거하고 있다. 우선 이번 기본통신협상 타결은 통신시장의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이 종결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는다. 부가통신서비스에 대한 포괄적인 자유화가 달성되었던 UR 종결시에 이미 WTO 회원국들은 1994년 5월 기본통신협상의 출범과 함께 2000년 이전에 모든 산업분야에 대한 포괄적인 협상으로서 차기 라운드의 출범을 약속하였다. 따라서 이번 협상에서 통신시장의 완전자유화를 약속하지 않은 국가들의 경우에는 선·후진국을 막론하고 차기 라운드의 협정이 발효될 것으로 예상하는 2000년대 초반에는 통신시장에 대한 전면개방을 피할 수 있게 된다.

다음으로 통신시장 자유화를 위한 다자간협상 추진과 관계없이 이번 기본통신협상은 실질적인 통신시장 자유화를 확대해 가기 위한 국제적인 경쟁규칙들로서 Reference Paper를 마련하였다. 내년부터 전세계 대부분의 국가에서 Reference Paper에 담겨진 규제원칙이 발효되고, WTO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규제제도가 차별적으로 운영될 경우는 제소의 대상이 된다. 다시 말해 시장진입에 대한 교역장벽의 철폐문제는 차기 라운드에서 논의될 수 있겠으나, 내년부터 각국 시장내에서 내·외국사업자를 차별하는 방식으로 국내 규제제도를 운영할 수는 없다. 국내 규제제도의 공정한 운영없이는 시장진입이 실효화될 수 없다는 점에서 다자간 합의된 규제원칙 준수의무의 발효는 매우 중대한 의미를 갖는다. 한편 Reference Paper는 '무엇이 원가에 기초한 가격인가'와 같은 민감한 문제들에 대해서는 구체적으로 언급하고 있지 않기 때문에 국내 규제제도의 차별적인 운영 여부와 무관하게 이러한 문제들에 대한 분쟁 발생에 대비하여야 한다.

#### 4.5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 촉진

시장개방 이후 외국사업자의 국내진출 및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 증가에 따라 빈번하게 발생할 것으로 예상하는 회원국간 통상마찰에 대한 정부의 자세변화가 필요하다. 정부는 장기적인 전략에 따라 차기 라운드에 대비해야 할 뿐만 아니라, 국내사업자들의 정당한 상업적 이익을 보호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는 경우 WTO에의 제소를 포함한 공세적인 통상외교를 불사하여야 한다. 만일 그렇지 않다면 국내사업자의 해외진출은 물론 국내시장 방어조차 어려운 상황에 처할 수 있다. 하지만 가장 먼저 전제되어야 하는 것은 통신시장 개방 이후 생존경쟁의 환경속에서 살아남기 위한 통신사업자들 스스로의 노력이다. 통신산업이 급속도로 국제화되고 있는 현실에 비추어 볼 때 이러한 노력은 단순히 국내시장 방어 차원에 그치는 것이 아닌 적극적인 해외시장 진출로 이어져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해외 사업환경의 변화에 따라 다각적이고도 유연한 해외진출 전략 수립이 전제되어야 한다. 해외투자 관련, 선진국 시장의 경우에는 전면적인 외자진출을 허용하지만 국내사업자에 비해 기술수준이 우세하므로 기존 사업자에의 지분참여나 전략적 제휴를 통하여, 그리고 개도국 시장의 경우는 외자진출 허용 한도에 따라 기존 독과점사업자에의 지분참여와 직접투자를 적절히 배합하여 시장진입을 시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효과적인 해외투자의 전제조건으로 해외투자에 대한 투자율권을 확대할 수 있도록 불필요한 절차는 되도록 간소화하여야 한다.

#### 4.6 국제사회에 대한 우리의 역할 증대

WTO 기본통신협상은 우리에게 남다른 의미를 갖는다. 쌍무협상 과정에서는 상대적으로 약소국의 이해가 균형있게 반영되기가 어려운 것은 물론이고, 협정체결 이후에도 협정내용 및 이행방식을 해석함에 있어 강대국의 편파적인 논리에 끌려 다니기 십상이다. 다자간협상에서는 현안에 따라 협상참여국들의 이해관계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협상 상대방이 정해져 있는 쌍무협상과 달리 현안 여하에 따라 우리의 동조자를 규합함으로써 힘의 균형을 도모할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다.

이번 협상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이러한 다자간협상

의 생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함으로써 1995년 말 관계장관회의와 국무회의 보고를 거쳐 확정된 시장개방계획과 협상전략의 범위내에서 성공적인 협상을 이끌어낼 수 있었다. 특히 1996년 하반기 협상기간중에는 전략적으로 Reference Paper의 추가양허를 자연함과 동시에 협상참여국들의 관심사를 critical mass에서 국제서비스 및 위성서비스 쪽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주요국들로부터의 양허개선 압력을 효과적으로 봉쇄할 수 있었다. 이러한 과정에서 우리나라는 아시아국가간 비공식협의체(Asian Caucus) 구성 및 운영을 통하여 미국, EU, 일본, 캐나다 등 주요 4개국(Quad)의 시장개방압력을 공동 저지하고 아시아국가들의 입장을 대변하는 등 통신선진국으로서의 주도적 역량을 과시하기도 하였다.

한편 정부는 기본통신시장 자유화에 대한 대국민홍보에도 게을리하지 않음으로써 대내적으로 원만하게 협상을 종결시킬 수 있다는 좋은 선례를 남기게 되었다. 이를 위하여 정부는 1995년 7월 통신시장자유화의 기본지침이라고 할 수 있는 '통신사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본정책방향'을 발표함으로써 '선 국내경쟁, 후 국제경쟁'이라는 단계적 시장개방계획에 대한 청사진을 제시하였다. 또한 협상의 초기단계라고 할 수 있는 1995년에 이미 대국민 여론조사, 설명회, 공청회 등을 통해 나타난 업계, 언론, 연구소 등의 의견을 수렴하여 시장개방계획 및 협상전략에 반영하였다.

결론적으로 이번 협상은 수세적 대응보다 다자간 협상체계의 생리를 전략적으로 활용하는 공세적인 협상추진이 최선의 선택이라는 교훈을 남기게 되었다. 또한 국제무대에서 우리나라가 차지하는 위상은 근시안적으로 우리의 권익만이 아닌 다른 나라들의 권익도 함께 대변할 수 있는 세계 5위의 통신선진국에 이르렀음을 깨닫게 된 것도 큰 수확이다. 여기에서 분명한 사실은 우리나라의 위상 제고는 곧 국제사회에 대한 영향력의 증대를 의미하지만, 한편으로는 국제사회를 위한 우리나라의 역할과 책임의 증대를 의미한다는 것이다.



강 문 석



이 한 영

- 1983년 8월 : 연세대학교 경제학과 졸업
- 1986년 8월 : 서울대 행정대학원 졸업(행정학석사)
- 1991년 6월 : 미국 하바드대학원 졸업(정책학석사)
- 1988년 9월 : 체신부 통신정책국 통신업무과 사무관
- 1994년 7월 : 정보통신부 정보통신협력국 협력기획과  
사무관
- 1995년 8월 : 통신개발연구원 과견서기관  
(WTO기본통신협상 실무수석대표)
- 1996년 11월 : 정보통신부장관 비서관

- 1986년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학사)
- 1988년 : 서울대학교 국제경제학과 대학원 (석사)
- 1994년 : 미국 Duke 대학교 경제학과 대학원 (박사)
- 1995년 ~ 현재 : 통신개발연구원 책임연구원
- 관심분야 : WTO 다자간협상, 쌍무협상